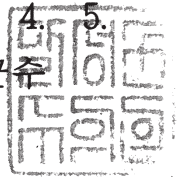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5
----------	------

제출일자 : 2021. 4.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개정)이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 (1) “사용” 과 “이용” 에 대한 정의 구별(안 제3조제2호)
- (2) “사용자” 와 “사용료” 의 정의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제4호, 제5호)

나. 운영

-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 근거 마련
(안 제4조제3항)

다. 사용

- (1)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9조)
- (2)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20조)
-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면제 조항 추가(안 제21조)
- (4)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2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1. 3. 10.~3. 30.)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사용대가”를 “이용대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제20조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이용”을 “이용·사용”으로 한다.

제6장(제26조부터 제27조까지)을 제6장(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으로 하고, 제5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제5장(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으로 하며, 제4장에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1회에 한하여 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대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할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6. 사용허가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6 -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구 조 :
- 면 적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사용허가 공유재산의 표시]

소재지 :

사용허가 할 부분 :

위 사용허가 공유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자 달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허가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정한다.

제1조(사용목적) “을”은 재산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연간사용료)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정하되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 월할 계산에 의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1차년도 사용료는 입찰가액(부가세포함)으로 한다.

③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결정 통지한다.

제4조(납기 등) ①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해당 연도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 ①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에서 “을”이 재산 사용을 종료한 기일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되, 그 계산방법은 제3조제1항을 따른다.

② “갑”이 제10조제2호부터 같은조제5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연장, 감면요청) ①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달성군에 책임 있는 사유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을”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책임)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보험가입) “을”은 재산에 대하여 달성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을”은 “갑”이 납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재산을 인도받은 후 발생한 공과금 등을 체납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재산을 사용목적에 이용하지 못할 사정
에 처한 때
5. 그 밖에 본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1조(사용허가취소 요청) ① “을”은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갑”에 대하여 본 사용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이 전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일 2월 전까지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취소일은 위 서면을 제출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에서 제2항에 따른 취소일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되, 그 계산방법은 제3조제1항을 따른다.

제12조(원상회복의무)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을”

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여 반환하여야하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을“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공과금 등의 납부) “을“은 “갑“이 별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부담) 사용기간 만료 후에 “갑“이 계속하여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을“이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법령 준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본 사용허가가 원만히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허가조건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허 가 자(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수허가자(을)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험료”란 사용자가 센터 시설의 사용대가 또는 수강료 등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 이용자 ----- ----- --- 이용대가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용자”란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 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제20조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② (생 략)	제4조(관리·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센

제4장 이용
<신 설>

<신 설>

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사용

제19조(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1회에 한하여 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대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

<신 설>

례」 등을 따른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할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5장 위탁운영·관리 <신 설> 제19조 ~ 제25조 (생 략) 제6장 보칙 <신 설> 제26조·제27조 (생 략)	5.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무단으 로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6. 사용허가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삭 제> 제5장 위탁운영·관리 제23조 ~ 제29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6장 보칙 제30조·제31조 (현행 제26조 및 제 27조와 같음)
--	--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 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

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

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